가정상담

2021 11

통권 459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본소 강당에서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1년 2차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심포지엄에 이어 본소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으로 전국의 관련기관 및 관심있는 이들이 사전예약을 통한 화상회의(ZOOM)로 실시간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34면)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20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온 • 오프라인 심포지엄 II
30 • 어떻게 할까요
33 • 새로 들어온 책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 원고 넘쳐 '가정폭력상담실'과 '기획연재'는 쉽니다.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하동 꽃도라지〉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1. 11.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이 달의 메시지

‘폭력 없는 가정’을 향한 끝 없는 여정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금부터 60여 년 전 상담소가 문을 열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밀려들던 여성들의 하소연이란 거의 한결같이 남편의 폭력과 외도, 시집의 학대였습니다. 피해자와 더불어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온 상담소에 대해 세간에서는 이혼을 부추기는 혹은 가정에 폭력이라는 온당치 못한 말을 갖다 붙이면서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기관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부부차별과 남녀차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담소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무지한 생각이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가정폭력은 그 이름도 제대로 없이 그저 ‘집안일’이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북어와 비교하면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며, 가정 내 모든일들은 조용히 있으면 될 일로 치부되었고 심지어는 가정 내 약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상담소로서 가정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신설, 개정,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그 결과 1998년 여성들의 오랜 숙원인 가정폭력특례법을 만들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가 문을 연 지 4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공권력의 광장으로 끌어내 공론화하고 법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지만 그 양상은 우리들의 바람과 다릅니다. 법 시행 초기 가정폭력의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 드러나면서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했지만 가정폭력은 법 제정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결코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그 양상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도 결국은 폭력이라 주장 했지만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조금 다르기를 기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평화를 지향하지만 그것은 결국 바람이고 평화란 과정이며 인류의 역사는 하루도 분쟁 없는 날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폭력이 그러하듯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가정 또한 다르지 않다는 당연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변화의 양상에 맞추어 가정폭력의 변화를 바르게 읽고 빠르고 적절하게 그에 대처하는 것이 아마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람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더욱 섬세한 대처가 필요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상담소는 설립 초기부터 가정폭력에 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에 앞서 1996년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1998년 가정폭력특례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해마다 이와 관련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법안의 제정과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초기 우리에게 각인된 가정폭력의 이미지는 '매 맞는 아내'였습니다. 지금은 매 맞는 아내, 서로 폭력을 주고받는 부부, 자녀 학대 및 노인 학대와 더불어 미성년자녀를 포함한 성인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폭행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서, 문화에 비추어 더욱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기에 상담 또한 미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비롯하여 성인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모를 때리는 자녀, 자녀에게 맞고 산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란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돌아와 쉴 곳,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가정에 속할 수 있도록 상담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에 한발 다가서는 것은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괴롭고 입에 담기 껄끄럽다고 우리 사회의 이혼을, 가정폭력을, 저출산을 외면해서는 결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담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가정과 관련한 이 모든 과제에 대해 결코 눈 감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여정에 설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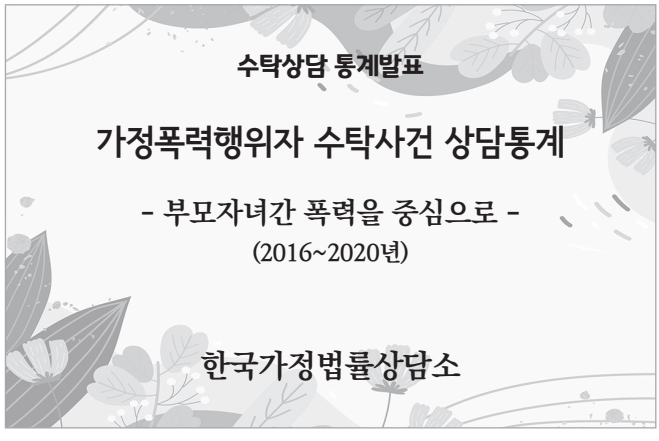

제 4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 및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담위탁되어 처분이 종결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과 본소에 위탁되어 상담을 진행하고 종결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를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 중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인 성인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아들이 72.2%(39명), 딸이 27.8%(15명)로 아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폭력유형으로는 아들에 의한 아버지 폭력이 51.8%(2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들에 의한 어머니 폭력이 20.4%(11명)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의 연령은 20대가 42.6%(23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2.7세였다. 반면 피해자인 부모의 연령은 50대가 42.6%(21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2.2세였다. 피해자인 부모가 65세 미만인 경우가 72.2%(39명)로 많았다.

둘째, 성인자녀의 경우 미혼이 90.7%(49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88.9%(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48명 중 64.8%(35명)은

*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본소 강당에서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2021년 두 번째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본소의 이 주제 관련 상담통계 및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주제와 직접 관련있는 부분 중심으로 게재한다.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의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심포지엄 관련소식은 34면 참조.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셋째, 성인자녀 54명은 모두 부모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자녀의 정서적 폭력은 부모로 하여금 수치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8%(42명)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든 경우'가 59.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68.5%(37명)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48.1%(26명)로 가장 많았다

넷째,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행사 이유(중복응답 가능)는 행위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18.5%, 17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17.4%, 16건), 부모로부터의 지속적인 학대경험(16.3%,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행위자인 성인자녀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음주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폭력을 하였다. 또한 성인자녀가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폭력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상담종료시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인 성인자녀 96.3%(52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성인자녀가 집을 나와 주거지를 분리하게 된 경우가 31.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피해자인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주요 연구결과 중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인 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78.9%(56명), 어머니가 21.1%(15명)로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폭력유형으로는 아버지에 의한 아들 폭력이 42.3%(3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에 의한 딸 폭력이 36.6%(26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50대가 60.6%(43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58.3세였다. 반면 피해자인 자녀의 연령은 20대가 62%(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8.2세였다.

둘째, 행위자인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90.1%(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4명 중 이들 자녀의 70.3%(45명)는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일정한 수업이 없거나,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셋째, 부모 71명 모두 성인자녀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정서적 폭력이 있었다. 부모의 정서적 폭력은 자녀로 하여금 자존감을 위축시키는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게 한다. 경미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5%(55명)로 나타났으며,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다른 곳을 때린 경우'가 66.2%(47명)로 가장 많았다. 심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5%(55명)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56.3%(40명)로 가장 많았다.

넷째,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행사 이유(중복응답 가능)는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33.9%, 60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26.5%, 47명),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20.9%,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상황 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성인자녀가 문제행동(잦은 외박이나 정리정돈이 안 되는 생활태도, 부모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을 보일 때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면서 지적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다섯째, 상담종료시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행위자인 부모 98.6%(70명)가 폭력의 재발이 없었다.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회복여부를 살펴보면, 서로 화해하여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35.2%(25명)로 가장 많았다.

제 2 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 증가, 특히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실태 및 부모의 성인자녀폭력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가정폭력의 변화된 양상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에게 폭력을 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된 성인자녀는 아들이 절대적으로 많고(72.2%), 20대가 가장 많으며(42.6%), 미혼인 상태로(90.7%) 대부분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88.9%). 부모폭력 이유는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 모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상담처분 종료시 성인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와 주거지를 분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96.3%)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자녀에게 폭력을 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부모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많고(81.7%), 50대가 가장 많으며(60.6%), 대체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90.1%). 자녀폭력의 행사 이유는 가족관계에서 폭언이나 욕설, 모욕적인 언행 등을 사용하여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상담처분 종료시 부모와 성인자녀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35.2%).

향후 가정폭력 상담,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상담할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미시적 차원(상담현장), 사회적 차원(교육 및 인식 개선), 거시적 차원(정책 및 제도)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상담현장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진행할 때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자녀일 경우 아동, 청소년, 성인기 자녀 등 발달단계별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폭력 발생과정에 성별 차이가 있으므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기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 확립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및 부모의 성인자녀 폭력 행사 원인 중 부모(부부)의 폭력에 자녀가 개입하면서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상담현장은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폭력문제를 상담할 때 그 가족의 폭력 역사를 탐색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자녀에게 폭력을 한 부모, 부모에게 폭력을 한 자녀 모두 과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내 폭력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역동을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상담개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폭력예방 교육 및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성인자녀와 부모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정서적 폭력을 수반하였다. 폭력행동은 욕설이나 심한 말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에서 점차 신체적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 또는 부모교육시 욕설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강조하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폭력의 범주에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처벌기준 또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 전 부모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는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부모교육을 통해 상호간 존중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마음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태도를 정립하며 자녀를 체벌이 아닌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자녀간 폭력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상담소는 오래 전부터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정책 및 제도적으로 부모폭력을 공적 이슈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는 부모폭력을 개인적 인격 파탄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러한 낙인은 자녀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고 치료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부모폭력을 이해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에게 폭력을 한 성인자녀의 특성 중 미혼, 부모와 동거, 경제적 의존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었다. 미혼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단순히 가족내부적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는 사회문화적 측면, 고용불안정과 실업현상 등의 경제적 측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발달적 측면, 더 나아가 정책적 지원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을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현재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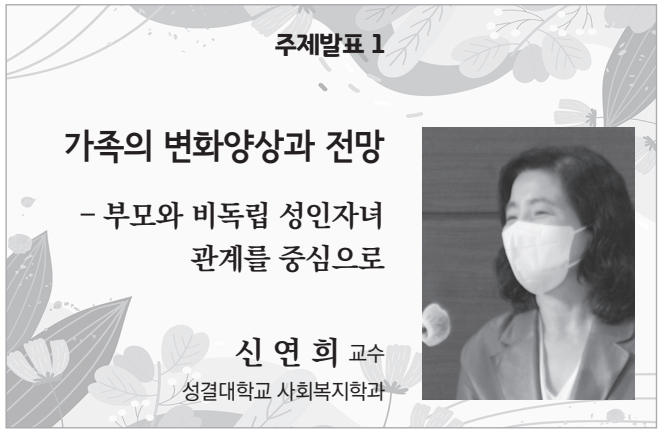

III.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특성

1.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청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세대는 돌봄을 주는 역할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되고, 자녀들은 이제껏 자신에게 돌봄을 주었던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로 점차 바뀌게 되는데, 이는 부모나 성인자녀 모두 각자의 생애주기에서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이다. 개개인들에게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시기이고, 사회제도들은 새로운 가족구조에 대한 정체감 확립을 양세대가 원만히 이루면서 일상적인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체계의 확립을 형성해야 하는 과업이 부과된다(김태현·임선영, 2004: 여가부, 2011: 317-318 재인용).

그런데 비독립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생애주기에서 전환되어야 할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지체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 등 독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서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부터는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조사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최근 들어 부모에 의존하는 성인자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성인이 되었어도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자녀들을 의미하는 캥거루족, 패러사이트 싱글, 부메랑 키즈, 연어족, 키퍼스 등은 부모에 의존하여 사는 젊은층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다(강유진, 2016).[1]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를 지속하는 것은 비규범적이라는 점에서 일탈적 현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비독립 성인자녀를 부모에 의존하고 기생하는 캥거루족으로만 접근할 것인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세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 사회현실이다. 청년층이 부모로부터의 독립, 나아가 독립된 가족을 꾸리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초래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 '캥거루족'은 성인이 되었어도 캥거루처럼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른다. '패러사이트 싱글'은 일본에서 유행한 신조어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30대에 이르게 되어 부모의 기생하여 사는 독신자나 잠재적 독신자를 의미한다. 기생충(parasite)와 미혼(single)의 합성어로서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잠시 종사하며 대부분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부메랑 키즈'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대학입학 등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독립하였으나 직업을 얻지 못하여 다시 부모에게로 되돌아오는 젊은 세대를 이른다. '연어족'은 독립하였다가 주거비 지출 등 생활이 어려워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을 이른다. '키퍼스(kippers)족'은 영국에서 유행한 용어로서 부모의 퇴직연금에 의존해 사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청년실업율은 8.0%(2010년) → 9.2%(2015년)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불안정, 높은 주거비,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혼 기피는 성인자녀들의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비독립이 순수하게 자율적 선택이 아닌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강제된 선택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성인자녀들이 많다면 사회는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성인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할 것이고, 사회적 규범 또한 성인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부모와 성인자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서구에서는 이러한 일에서 벗어나 있는 비독립 성인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비교적 빨리 주목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부양을 부모의 책임으로 여기는 한국의 가족문화에서는 형편이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끝없는 지원은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인해 비독립 성인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문제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였다(강유진, 2016). 자녀가 교육을 마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였고,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라는 신념이 한국사회에서는 강하다(강유진, 2016). 또한 한국의 가족문화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출발점을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비혼의 자녀가 부모슬하에 있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성미애 외, 2017).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비혼 성인자녀와 부모 모두에게서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김혜지, 2021). 한국사회에서는 비혼 및 만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비독립 성인가구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가족문화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뒷바라지를 끝내지 못하는 부모세대와 그들 자녀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5년 조사에 의하면 34세 이하 대졸자의 51%가 부모로부터 주거를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16). 비혼 및 만혼으로 인한 독립기회 상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독립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인자녀들의 비독립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와 분리된 노후를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부모세대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응답은 60대는 5.3%(2015년 7.4%), 70대이상은 14.3%(2015년 21.0%)에 지나지 않으며,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는 응답을 합하면 60대 84.0%(2015년 78.9%), 70대이상은 75.1%(2015년 68.3%)이다(여성가족부, 2021: 288; 여성가족부, 2016: 365).

2015년과 2020년 조사를 비교하면 60세 이상 노인세대들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자녀와 분리하여 혼자 혹은 배우자와 단둘이 살겠다는 응답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부모들의 욕구에 반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성인자녀들 역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것은 심적 부담이 되는 삶이 아닐 수 없다.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의 증가현상은 개별 가정으로서는 노후준비를 어렵게 만들고 노인부모들의 빈곤이 우려되는 일이며, 사회적으로는 결국 노인부양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다.

〈 노후생활(노후 희망동거인)에 대한 60대 의견〉

- 자녀와 함께: 7.4%(2015년) → 5.3%(2020년)
-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78.9%(2015년)→ 84.0%(2020년)

비독립 성인자녀 문제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생활양식이 부모-자녀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논의한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의존적인 성인자녀의 존재가 중년기 혹은 노년기 부부의 삶에 부정적이며 심리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Auilino & Supple 1991; Mitchell & Gee 1996; Lee et al. 2011a; 강유진, 2016 재인용). 이에 반해 자녀와의 동거가 빈둥지 시기를 늦추고 중년기의 허전함을 채워준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이다(Byers et al. 2008; Lee et al. 2011b; 강유진,

2016 재인용).

비혼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동거이유로 서로에게 심적으로 의지가 된다는 것이 가장 컸다(김혜지, 2021). 경제적 교류와 같은 도구적 교류보다는 심적·감정적 교류와 같은 정서적 교류가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부모-자녀 간 간섭·갈등 측면에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간섭에 대해 자녀가 인지하는 수준이 부모가 인지하는 수준보다 약간 높았으나, 일상생활 갈등은 성인자녀 와 부모 모두 가끔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혜지, 2021).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서도 정서적 교류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상호지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하였다.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상호지원의 차이에 관한 〈표 3-1〉에 의하면,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도움의 주된 내용은 정서적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와 자녀 모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부모-성인자녀 상호지원은 더 많으며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다. 특히 동거하는 비독립 성인자녀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202). 부모-자녀관계의 교환이 공평성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 지원 혹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교환은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독립 성인자녀가 부모에게는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자녀간 상호지원의 불균형 정도가 동거하는 성인자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부모가 비동거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내용은 경제적지원와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이다. 특히 경제적 지원은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독립한 자녀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혼성인자녀와 부모자녀 관계를 분석한 강유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도 성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도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구의 연구들(Flanagan et al. 1993; White & Rogers 1997; 강유진, 2016 재인용)도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관한 모든 항목에서 비동거 성인자녀들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국내의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표 3-2〉 참조), 부모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와의 친밀성에서 더 부정적이다(여성가족부, 2021: 210). 자녀와의 친밀성에서도 동거하는 경우가 더 부정적이다. 부모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와의 친밀감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면에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1〉 부모-성인자녀와의 상호도움(동거여부에 따른 차이, 부모관점)

		성인자녀에게		성인자녀로부터	
		도움 주고있음	도움 주지않음	도움 받고있음	도움 받지않음
경제적 도움 (생활비,용돈 등)	동거	41.7	58.3	35.8	64.2
	비동거	18.0	82.0	31.3	68.7
가사 등 집안일 도움	동거	63.0	37.0	45.8	54.2
	비동거	10.7	89.3	12.1	88.0
가족원 돌봄 (손자녀돌봄, 병간호 등)	동거	26.2	73.8	19.1	81.0
	비동거	11.4	88.6	7.0	93.0
정서적 지원	동거	74.1	25.9	63.8	36.3
	비동거	54.8	45.3	54.3	45.7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21: 202 재구성)

〈표 3-2〉 부모-성인자녀와의 친밀감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 부모관점)

	부정적	보통이다	긍정적	전체
성인자녀와 동거	7.9	36.2	55.9	100.0
성인자녀와 비동거	8.5	34.7	56.8	100.0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21: 210 재구성)

35세 이상의 성인자녀를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경제적 의존을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국내의 연구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동거·의존형'의 비독립 성인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부정적이어서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수준은 낮고,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세대 역시'동거·의존형' 자녀가 있는 경우에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성미애 외, 2017).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여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동거·의존형 성인자녀들이 부모의 경제력이 고갈되는 노년기까지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화된다면, 가족 간의 갈등과 경제적 문제를 겪는 가족들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비독립 성인자녀의 문제를 가족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문제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미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 간에 발생한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구와 국내 모두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보고가 더 많은 편이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상 상호교환이 균형을 이루지 않더라도 가능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된다(강유진, 2017). 친밀감이 결여된 부모와 비독립 성인자녀 관계는 거주만 함께 할뿐 상호작용은 없는 단순 동거 형태의 가족관계인 분리동거형 가족생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관계에서는 상호 친밀감은 낮고 소통은 원만하지 않아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이 많을 수 있다.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이상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성인자녀가 부모에게서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기 및 성인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생애주기의 발달과업 측면에서 비규범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청년문제 및 비혼 등과 같은 가족가치관 변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개별 가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독립 성인자녀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지원이 불균형적으로 부모에게 쏠려있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친밀성 또한 낮아서, 성인자녀의 비독립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할 때 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가치관이 팽배한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부모세대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인부모의 자녀부양이 장기화된다면 이로 인해 노인세대의 삶의 질은 저하될 것이며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예측된다. 이에 대응하여 성인자녀의 독립을 지원하는 방향과 동거하는 동안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2. 사회변화와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

한국 가족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양상은 상당히 뚜렷하다. 최근 들어 독립하지 않은 성인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의 발생에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 있을까? 이하에서는 부모-비독립 성인자녀 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적 쟁점들을 탐색적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1) 부의 불평등 심화

"자녀의 독립이 어려워진 사회, 저소득 가정의 젊은 세대들은 독립이 가능할 것인가?"

최근 부동산문제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떠들썩했다. 그 와중에서 부유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서둘러 부동산을 증여

하고,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일정부분 부모의 지원을 받아 영끌이로 주택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서민가정 청년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은 차치하더라도 임대까지도 어려워진 상황이니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계획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자녀들의 처지에는 이처럼 사회적 배경이 있으며, 계층에 따라 청년들의 경험은 다르다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2) 청년실업

"경제적 독립 없이 주거독립은 가능할까?"

청년인구 10명 중 한명이 실업상태이다. 2020년 청년으로 분류되는 15세-29세의 청년실업율은 9.0%이다(e-나라지표, 2021). 물론 9.0%에는 학업 중이거나 학업을 연장하고 있는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 실업에 비혼까지 겹친다면, 무직의 비혼 자녀는 성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녀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독립할 여건이 안 되는 자녀를 강제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은퇴한 부모의 연금에 의존하여 사는 자녀들, 소위 캥거루족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의 상당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때까지 지원할 수도 있겠으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부모세대 역시 실업, 조기은퇴, 사업장 폐쇄 등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이 된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은 부모-성인자녀 간 갈등과 불화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3) 개인화된 사회

"개별성, 다양성,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세대와 가족의 집단성을 강조하는 부모세대 간의 마찰"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으니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려 한다. 부모세대의 가치와 기대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동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그만큼 소통이 없었던 탓에 소통부재로 갈등하였다면, 지금은 많은 시간을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교류가 더 원만하지 않다. 함께 있으나 소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있어서 마찰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일로서 개인의 혼인여부에 대한 결정에 사회가 압박을 줄 일은 아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동거를 지속할 것인지도 개인의 권리이다. 다만 그러한 선택이 혼인을 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독립을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선택된 행위라면 사회제도는 달리 반응해야 한다. 자신의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과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존속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4) 기술발달과 세대 간 격차

"기술발달의 속도에 비례하는 세대 간의 간격과 불통"

한국사회와 가족의 변화를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측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가족관계와 가족의 기능, 감성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간관계가 발전하게 되고, 가족의 개인화가 더욱 가속되며 특히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단절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서수경, 2002). 또한 가족생활에서 독자성과 자율적 활동을 인정하고 개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므로 집단으로서의 가족은 개인의 생활을 강제하거나 구속하는 제도가 되지 못할 것으로 논의된다.

오늘날 놀라운 속도의 기술발달 및 정보통신 발달은 세대 간 격차의 가장 큰 영역일 것이다. 아날로그 세대로 불리는 부모세대는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 기술에 적응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상생활 형태, 주된 관심사, 사건에 대한 대응양식 등 모든 면에서 세대 간 차이가 역력하다. 편리한 기기들이 부모세대에는 오히려 어렵고 불편한 대상이며, 자

녀들에게는 인터넷 공간과 컴퓨터와 모바일이 소통 공간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족과 소통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제 부모와 자녀는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교감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방에서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모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자녀를 이해할 수 없으며, 자녀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가 답답하다. 기술발달의 속도가 빠른 만큼 세대 간 간격은 그만큼 커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다.

IV. 한국가족의 전망과 대응

1. 한국가족의 변화 전망

한국 가족은 구조적으로 분화를 거듭하면서 다양화되고 있으며, 가족가치관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개인화의 경향이 뚜렷하고, 재생산과 돌봄이라는 가족의 기능은 이미 약화된 상태이어서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가족관계에서는 개인화와 맞물려 정서적 교류와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가족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한국 가족 변화의 주된 특성으로 "1인 가구 및 2인 이하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비혼독신·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지고 있으며, 가사 분담 등 가족 내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5.31. 보도자료). 가족의 형태와 구조,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 폭넓은 변화가 한국 가족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가족의 변화 이후에 오는 가족 역시 가족이다. 다만 달라진 가족의 모습과 변화된 기능과 특성으로 존재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가족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다. 단일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족은 없는 것이 한국가족의 현재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일과 가족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근대적인 이분법적 젠더질서는 성 • 젠더 • 섹슈얼리티에 관한 새로운 인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모성의 신화를 깨는 대중의 변화된 인식은 대중문화에서도 표현되고 있다.[2] 그러나 가족의 변화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은 지체되어 있다(이재경, 2018). 한국가족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가족의 과도기적 현상을 관련연구와 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상기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한국가족의 미래를 이슈별로 전망하고, 가족구성원의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족기능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의 정의도, 함께 사는 것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가족은 혈연인가? 정서적 결합인가? 한국가족은 가족의 형태 및 범위, 성역할, 결혼제도, 출산행위, 친밀성, 가족규범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정의와 가족구성원의 생활양식은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 유연화(increasing flexibility)되고 있다(이재경, 2018).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에서 친밀감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통계치를 통해 확인

2) 가족의 변화 가운데에는 모성담론의 신화가 문화 속에서 깨어지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모성담론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핵가족의 이데올로기이다. "완벽한 엄마, 강한 엄마, 모성은 완벽함이라는 사회적 믿음, 모성의 신비화(엄마와 자녀는 교통한다)"와 같은 모성에 대한 과대포장과 기대감은 여성들로 하여금 완벽한 엄마가 되라고 압박하면서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엄마책임으로 전가시켜왔다. 그러나 완벽한 엄마를 원하는 세상에서 엄마로 살아가기 버거웠던 여성들은 살림·육아·직장(일) 뭐든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는 스스로에 대해 나쁜 엄마라는 자책감을 가지는 것은 세상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다."(윤옥희, 2019). 최근의 대중문화는 말한다.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원래 없다."한국 가족주의 문화의 기반이 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모성담론을 과감하게 부정하는 움직임이다.

하였다. 또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정서적 교류가 차지하는 위치는 컸다. 가족관 및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가족변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가족을 혈연에 기반하고 있는 법적관계, 경제공동체로서의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친밀감이 있으면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동거, 즉 함께 사는 것이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달라졌다. 웹과 인터넷의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화되는 메타버스(meta verse) 시대, 직장과 주거의 공간적 경계가 애매해진 '직주모호성'과 같은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공간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가족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오늘날 '네트워크형' 가족처럼 가족 밖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삶의 양식이 증가하는 현상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된 개념이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공간에 있으나 서로 교류하지 않는 '분리동거형 가족' 형태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으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교류하는 '네트워크형' 가족의 형태가 병존하는 현상을 상당수의 가족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혈연중심의 제도적 가족개념에서 벗어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가족관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물리적 동거와 정서적 동거가 병존하면서 정서적 동거는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물리적으로 한 주거공간에서 얼굴을 맞댄 교류가 가족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사회가 되었다. 주거공간을 함께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거형 분리가족'은 가족 밖의 사람들과는 주거공간을 함께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분리형 동거가족(네트워크형 가족)'의 형태로 가족을 형성해 가기도 할 것이다.

둘째, 개인화된 가족주의는 확대될 것이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가족가치가 개인중심의 가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가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개인화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된다. 개인중심 가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유효하다. 가족영역에서는 결혼의 제도적 지위는 약해지고, 둘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보다는 독신가구가 증가하며, 집합으로서의 가족구성원보다는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인화 경향은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김영란, 2012).

이제 가족의 집단성, 한국의 집단주의적 가족주의와 가족문화는 개인적 가족주의, 개인화된 가족문화로 대체되어 갈 것이다. 개인화된 가족주의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unit)로 인식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족의 의미는 집합으로서는 약화되면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가족관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적 관계가 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될 것이며, 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영란, 2012).

따라서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제도적으로 맺어진 책임, 의무, 도리 등과 같은 규범보다는 친밀성이 강조될 것이므로 부부관계에서 성(sex)의 의미가 커지고, 부모-자녀관계는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게 된다(서수경, 2002). 또한 가족제도는 개인의 생활을 강제하거나 구속하지 못하는데 가정생활에서도 개인의 독자성과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인화된 가족관은 상호구속적인 결혼이나 혈연적 유대보다 독신이나 동거, 결혼 후에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결혼 및 가족관계를 선호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족을 구성하는 일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커질 것이다.

개인화는 우리의 생활과 생각 전반에 이미 와 있다. 그리고 미래 가족의 주된 가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다양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재경, 2018). 이런 면에서 개인화 및 개별화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도 상통한다. 또한 사회제도와 정책은 달라지고 있는 가족의 특성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주택과 도시계획, 복지정책, 교통정책, 가족정책 등은 개인화된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족생활을 반영하여 탈표준화 및 유연성과 다양성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이재경, 2018).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 개념에 대한 경계

나 범위를 완화하여 개인의 가치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원칙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의 다양성은 커져갈 것이다.

가족은 다양화되어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변하고 있다. 전형적인 가족의 유형도 사라졌고, 정상가족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해묵은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보였던 가족의 유형들(비혼독신, 비혼동거, 비혼출산, 무자녀, 다문화가족, 비혈연가족 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식도 바뀌고 있다. 20대를 비롯한 젊은층의 수용도가 높은 것을 볼 때, 가족의 다양성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족의 형성에 결혼과 비결혼의 경계가 완화된 것은 결혼과 가족의 탈제도화, 탈법제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 역시 가족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여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양육권, 상속권 등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서구의 추세를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정생활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1세기에는 근대 핵가족이라는 하나의 전형적인 가족모델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Furstenberg, 2014; 이재경, 2018 재인용). 이제 정형화, 표준화된 가족은 없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대한 정상가족 논의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정책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고 차별하거나 배제되지 않는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1: 348). 또한 가족형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받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은 소규모화 되고 있다.

1인 가구, 비혼, 무자녀 부부 증가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가구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자녀들, 이혼 후 혼자된 사람들,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초래된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를 비롯하여 가구의 소규모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으로 부부 + 자녀가구(28.8%), 한부모+자녀(10.2%)는 2045년에 각 16.8%, 9.5%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세대 가구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20년 기준으로 부부단독가구(16.6%)와 1인 가구(30.3%)는 2045년에 각 21.4%와 37.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국가통계포털, 2021). 이제 사회제도 및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1인 가구과 가구원수의 감소가 정책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구성의 소규모 현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간다는 점이다. 1인 가구는 연령별, 혼인상태별, 소득수준별로 서로 상이한 지원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연령에 따른 욕구의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 지원이나 가사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에,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주거안정화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1인가구의 유형별, 연령대, 그리고 1인 가구 형성 이유별로 지원욕구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년 · 중장년 · 고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여성가족부, 2021: 333 & 349).

다섯째, 돌봄의 위기는 돌봄의 상품화로 대체될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보살핌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존해 온 인간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살핌이 필요하다. 가족이 수행해 온 다양한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생명유지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돌봄의 역할이다(서선희, 2017). 예외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아이의 생명과 성장을 위한 돌봄의 가장 적합한 양육자는 부모이다. 양육자와의 안정된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아이의 인격은 건강하게 자라는 기본적 조건이며, 이 때 형성된 인격은 평생의 인격이 된다. 생명을 생명의 원리에 맞게 키워나가는 일은 생명을

낳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가족의 핵심적 역할이며, 가족의 원초적 의미이기도 하다(서선희, 2017).

개인화가 특징인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는 개인의 욕망과 근대적 가족제도가 충돌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재경, 2018). 가족행위를 보편적으로 규제해 왔던 표준화된 규범, 예컨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인생을 강조하던 과거의 제도와 규범은 자신의 성장을 중시하는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제도와 개인의 욕구, 그리고 규범과 개인의 가치는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변화하고 있는 개인의 생애와 가족은 기존 제도에 저항이 될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요구(demands)와 개인의 욕구 (needs)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이재경, 2018). 이러한 개인주의 가치관은 가족의 보호기능(부모부양, 자녀양육) 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화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돌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가속화되는 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 의존형 돌봄이 아닌 사회적 돌봄 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이미정, 2001).

가족관계에서 개인화는 돌봄 노동을 상품으로 구매하거나 공공의 지원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변화된다. 돌봄 서비스는 시장에서 상품화된 형태로 제공되어,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존재하여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김영란, 2012; 김혜영, 2010). 돌봄 영역의 상품화 추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현상이지만 돌봄의 공백을 상품화로 대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족이 전담하던 돌봄(양육과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는 마땅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지만(여성가족부, 2021: 349), 가족의 돌봄 기능이 가지는 긍정성과 효용성에 대한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는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의 중대 사안이다.

무자녀 가족에 대한 가족가치관은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생식이나 재생산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안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Blackstone, 2019: 333).

그러나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 우리사회에서는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꼴찌에 해당하는 합계출산율 0.84명(2020년)이고, 한해 내내 태어난 새 생명은 30만 명도 안 된다. 이대로 간다면 20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 존립의 문제인 만큼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일은 개별 가정의 역할과 책임에 의존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므로 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개별 가정의 부담을 담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출산기능은 우리사회를 유지시키는 근본이다. 가족의 근원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한국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육, 양육, 교육정책의 대변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일곱째, 평등한 가족문화,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보인다.

가부장적 위계질서,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평등한 가족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조짐이 공식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났다. 가족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모든 가치, 태도, 행위들의 총체인 가족문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의 소통과 교류과정은 가족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문화의 변화를 일으킨 동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취업은 성별 역할분리에 관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약화시켰다. 현재 기혼여성의 절반이상이 취업하고 있는데(2015년 기준 51%), 취업증가의 배경에는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안정성 약화, 소비의 확대, 주거비 상승과 같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이재경,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은 부부관계의 평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가사분담을 포함하여 가족 내 성 평등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관계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평등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평등한 가족문화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수행은 여성의 부담이 크고,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가정에서 남성들의 역할변화 수준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만큼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에 활발히 참여해야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 모두 조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함인희, 2010).

한편,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자녀 및 성인자녀 모두 아버지와의 긍정적 관계를 위한 가족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여성가족부, 2020: 350). 이와 함께 남성들의 변화도 필요한데,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아버지로서의 역할모델 정립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는 가부장적 자세와 성역할 분화에 입각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남성들도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 아버지들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더불어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일종의 문화적 압력으로 느껴질 만큼의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함인희, 2010). 나아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남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성인자녀의 지체된 독립으로 부모의 부담도 그만큼 연장될 것이다.

성인이 되었어도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사회상황이다.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가구가 적지 않으며, 청년들이 독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분리를 달성하지 못한 성인자녀는 생애주기의 발달과업에서 비규범적이며 일탈적 현상이다.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상호지원이 불균형적으로 부모에게 쏠려있어서 부모세대의 부담이 크며,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역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자녀들에 비하여 부정적이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비독립 성인자녀들에 대해 캥거루족, 패러사이트 싱글, 부메랑 키즈, 연어족, 키퍼스 등 부정적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강유진, 201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비혼, 만혼, 청년실업, 청년들의 고용불안정 등과 같은 현상과 맞물리면서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이 될 때까지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들은 늘어갈 것이다. 비독립 성인자녀들이 모두 기생하는 캥거루족은 분명 아닐 것이지만,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모-자녀관계이고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문제로의 연계가 예측되는 까닭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부모에 의한 자녀부양이 장기화될수록 부모세대는 빈곤한 노후생활을 하게 되고 비독립 성인자녀들은 삶의 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청년 실업 및 고용불안이 계속된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부모세대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아홉째,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가족의 해체로 귀결되기도 하는 부부 갈등과는 갈등의 전개과정이나 대응방식에서 사뭇 다르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단절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

연을 끊을 수는 더 더욱 없기 때문이다.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 간 갈등은 개별 가정들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사회전반적인 환경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가족문제에 대한 대응은 가족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틀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은 비독립 성인자녀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무엇보다도 성인자녀들이 별도의 독립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젊은층이 독립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과중한 주거비 부담에 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빈곤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상황의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다(한겨레신문, 2017.2.16.). 이 때문에 졸업 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주거 및 경제적 의존생활을 하게 되는 소위, 캥거루족이나 연어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실업 문제와 겹치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성인자녀의 비독립으로 인한 부모들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및 주택정책이 절실하다.

비혼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세대의 지원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부담스러워지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인자녀들의 독립에 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일자리와 주거지원 정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에 관한 지원도 모색되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 요인은 줄이고,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비독립 성인자녀 문제는 그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방향과 부모와 동거하는 동안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하는 이원적인 접근이 적절할 것이다.

열 번째, 가족기능의 사회화 확대에 대해 더 생각할 일이 있다.

가족기능을 사회가 지원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논의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현상),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대, 이혼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은 이제 사회적 차원의 가족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나아가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대상자 범위를 확장하여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 전에 제기되었다(이미정, 2001).

가족의 변화는 사회현상이므로 가치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일이다. 특히 아동의 불안정한 양육, 빈곤한 한부모 가정의 문제, 저출산이 주는 사회적 위기, 노인부양부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현명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가족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일이다. 가족의 기능은 재생산기능과 경제적지지, 양육과 교육 및 사회화, 노인부양을 들 수 있다(김미숙, 2006). 이러한 가족기능 중에 재생산, 자녀양육 및 교육의 기능, 돌봄의 기능은 사회제도(가족기능의 사회화)나 시장(상품화)이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관계에 의한 보살핌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가장 적합할 수 있으며 가족의 근본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인류역사 이래 지속되어온 가족의 생명과 도덕·윤리의 사회화에 대한 가족기능이 와해되고 있다면 지금의 가족변화가 초래한 가족의 문제는 위기일 수 있다(서선희, 2017). 이런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가족이 맡아왔던 기능을 경계 없이 사회로 대체하거나 상품화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가족이 본연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의 기능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편 개인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성 평등 의식은 증가하였지만 과도기적 현상이 존재한다. 성역할의 구분이 약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들은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로서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위까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함인희, 2001). 이에 따라 생계책임자가 아니면서 가부장적인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남편들과 경제적 독립을 통해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내들의 관계는 이혼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조은, 1999, 함인희,

2001). 예를 들어 이혼 또는 재혼가족 등 가족의 다양화가 여성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현상도 주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 한부모 가구는 이혼 전보다 소득이 1/3에서 1/2까지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서선희, 2017).

가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개인의 욕구와 사회제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가족변화로 인하여 오히려 취약해진 인구가 있다면(예를 들어, 빈곤한 여성 한부모 가정, 가사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소외된 1인 노인, 독립하지 못하는 빈곤한 가정의 성인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관련 법과 제도는 이와 같은 취약한 인구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맺음말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도 가족이 사회존속의 기본단위이고 개인과 사회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가족의 변화는 우리 사회 집단지성이 발전함에 따라 상당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체된 영역이 있고, 가족변화로 파생된 역기능적인 문제도 있으며, 가족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에는 평등한 가족관계와 같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 있고, 저출산, 비혼, 성인자녀의 비독립과 같이 우려되는 사안도 있으며, 돌봄과 부양처럼 가족과 사회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한 일도 있다. 변화된 가족의 현실과 변화추세를 직시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족구성원의 욕구와 가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회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제발표 2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이 서 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199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부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 사회에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실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 10년 단위로 이 법이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가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해왔죠. 지난 20여 년을 돌아보면 한국가정법률소에서는 번민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법률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우리 사회에서 첫 펭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최초로,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 폭력을 우리 사회 이슈로 던지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다른 펭귄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복지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상담소 자료를 말씀해주셔서 저는 실태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15년~2019년까지 5년 동안의 실태조사를 한 것 중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자녀의 노인 학대 비율을 보면 아들이 31. 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배우자 그리고 딸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동거 형태로는 자녀동거와 부부동거가 노인 단독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노노케어에 따른 70대 이상의 학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치매 걸린 90

대 부모를 봉양하던 70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대표되는 70대 이상의 자녀와 80대, 90대 부모 간의 폭력이 전국조사에서는 뚜렷한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30, 40대 비독립 성인자녀의 폭력 발생률이 25.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폭력이 뒤따랐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의 상담통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사례로 20대와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무직, 수입별로는 수입 없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 여부도 미혼이 90.7%를 차지하고 있고, 부모와 동거가 88.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아들이 72.2%로 높았고 정서폭력이 100%로 전국 노인학대실태조사와 유사합니다. 현황을 요약하면, 무직이고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비혼인 아들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력원인인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높은 폭력요인은 폭력자녀의 정신건강 문제, 그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시비,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경험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때리는 자녀, 폭력하는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분석할 수 있지만,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과연 처음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부모 자녀 관계가 결과적으로 만든 정신건강 문제, 혹인 정서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피학대 부모와 폭력을 가한 자녀들을 집단상담 하면서 느낀 바를 보면 폭력원인은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시계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옛날의 원인(오래된 원인)이 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 누적된 누적인(쌓인 원인)이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일어난 근인(근래 원인)이 있고, 직전에 폭력을 발생하게 한 굉장히 강력한 직전인(직전 원인)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지푸라기 하나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던 낙타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한계상황이 왔을 때 작은 지푸라기 하나가 올려져도 나타의 등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작은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 등을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전에 누적된, 오래된 원인들이 축적되어서 바로 직전 원인에 의해 폭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님과 자녀를 상담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오래된 원인, 누적된 원인, 근인, 직전인이 있어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녀가 국제 과학 경시대회 나갈 정도로 과학 영재였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원, 정서적인 갈등을 굉장히 소홀히 해서 중학교 때 이 천재적인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맞는 일이 생겼는데 부모가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도박에 정신이 팔려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아들에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제지했더니 어머니가 어디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하느냐고 오히려 아들을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 영재였지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하고 나서, 고참한테 맞아서 광대뼈가 부러지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군대 말만 믿고 병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면회 한번 안 갔다가 굉장히 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전역 후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게임하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는 것인데 엄마는 아들의 방이 너무 더럽다는 이유로 청소하면서 자주 마찰이 있다가 어느 날 엄마가 작심하고 그 방에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지옥이 된 날이었고 아들의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폭력이 지속되면서 견디지 못한 이웃의 신고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저를 만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원인, 누적인, 근인, 직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인이 하나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부도 함께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부부가 굉장히 미숙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끝내 본인들이 자녀에게 어떤 학대를 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토론자로

나온 정윤경 성생님과 함께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윤경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 중 잊지 못한 것이 '선생님, 때리는 자녀도 행복할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때리는 자녀도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또 맞는 부모는 행복할까요? 역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저에게 두 트랙으로 상담을 의뢰하셨고 제가 부모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자녀에게 맞은 부모를 상담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였지만 결과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효과의 대표적인 것은 상담 전에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부모 자신도 상담 효과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지금은 80세가 다 되어가는 분인데, 맏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아서 둘째 아들집으로 와서 손주를 봐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우유를 사러 나갔는데 5살, 3살된 아이가 심심해서 촛불을 켜다 불이 나 집이 전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한 명은 식물인간처럼 상해를 입었고 또 다른 한명은 겨우 목숨만 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쓰러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차를 몰던 할아버지는 뒤에서 오는 차에 받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의 가장 큰 효과는 해소와 이해였습니다. '나만 힘든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 '나만 이렇게 기구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구나~'하는 것에서 서로가 서로의 처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정서적인 것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이 해소와 해결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상담 효과는 해소의 측면임을 느낄 수 있었고, 상담 후 정서적으로 부모들이 굉장히 안정되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녀를 상담했을 때는 부모를 상담했을 때와 달리 해결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당신이 어쩔 수 없었나 보죠'라는 이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자신의 처지,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소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 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상담 효과를 보면,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었고 응어리가 해소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내가 왜 그랬는지 자기 이해를 하게 되었고 부모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잘 살 수 있을까, 관계 원리를 발견해서 서로가 알려주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해 자녀 상담이 피해 부모 상담에 우선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해 자녀 상담은 직선과 같아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피해 부모 상담은 해결에 이를 때까지 국도를 거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 기간, 상담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데, 상담 대기 시간은 짧게, 피해 부모 상담 시간은 더 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계속 진행해보니 일단 지각, 결석이 없고 편안해하고 얼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내면의 모습을 오프라인 못지않게 교류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사라진다고 해도 온라인 상담이 강점과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치료 상담 시간을 연장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고령화 시대 문제로 여론을 조성해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해온 것처럼 부모폭력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전문 상담가가 정보를 공유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을 시행하고, 효과를 평가하고, EBP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응방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호협력은 어렵다, 그러나 그 성과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기관, 실무자, 전문가들이 상호협력은 어렵지만 오늘 이 자리가 상호 협력의 첫 번째 장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성과는 파급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 론 문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에 대해

장 희 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가족의 기능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현상과 개인주의 확산은 가족기능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노부모 돌봄과 부양은 많은 가정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점차 개인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이는 공적 부양 서비스가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공적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있으나, 낮은 보장 수준이나 한국 고령자 빈곤율을 고려할 때 자녀의 경제적 부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돌보는 신체적, 도구적 수발은 감소하고 경제적 부양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진미정 외, 2020)에 의하면, 가족이 돌봄을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가족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에 대해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직접 돌볼 것인지 외부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상이 공적 부양 확대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하고 질 높은 공적 돌봄 시스템을 고안해서 자녀의 노부모 부양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써,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가족 내 돌봄 기능을 지역공동체가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접근방식입니다.

노후 부양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석재은, 2009), 노인 돌봄 책임 주체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 집단은 가족책임, 개인책임, 국가책임 순으로 응답했지만 45-64세 비고령 집단에서는 개인, 국가, 가족책임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부모-자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이원준, 2012)를 살펴보면, 성장 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이 부모-성인자녀 간의 친밀성, 정서적 애착을 매개로 노부모 수발 헌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갈등을 줄이고 가족부양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에 강조했던 역할수행을 친밀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원준(2012)은 자율성과 친밀성이 균형을 이루는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 가족 대상 프로그램에 노부모 부양, 노부모-자녀 관계 증진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노인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자기돌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남자 80세, 여자 86세입니다. 주돌봄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들 역시 건강이 취약해지는 중·고령층에 해당합니다. 문헌에서는 가족 내 주보호자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로 신체건강 저하와 높은 수준의 우울을 들고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사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정재훈, 2013). 환자에 집중해야 하는 돌봄 제공자들은 시간 부족, 소진 등으로 자기를 돌보는 활동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국내외 연구들은 주보호자의 자기돌봄 활동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돌봄에 관한 심리사회적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 건강, 심리·정서적 안녕, 사회적 지지, 영성에 관한 내용과 함께 돌봄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연계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2. 부모와 비독립 성인자녀

독립을 늦추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자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독립 성인자녀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들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적습니다. 더욱이 대상 가구가 특정 소득계층에 치우쳐 있는 것 같지 않아 지역사회기관과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보입니다.

실업 증가, 주거 마련 비용의 상승, 고용 불안정 등 청년세대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지연시킵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이는 부모, 자녀의 태도와 가치관, 한국 문화도 두 세대의 동거와 자녀의 의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자녀 부양과 장기간 동거는 당사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성미애 외, 2017), 부모의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며,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독립 성인자녀의 증가나 청년세대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일정부분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면 비혼, 만혼,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 사회,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게 됩니다. 성인기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요 요소들을 보면, 결국 일자리 창출, 고용과 주거 안정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관련 정책을 시도했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정책 및 제도의 주된 허점을 찾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은 분양면적, 비싼 임차료, 부실공사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개인의 웰빙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을 만들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이용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취업 연계, 취업인턴제 등도 개인의 역량과 욕구에 따라 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할 자질을 갖추어도 이를 발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대상 청년들의 배경, 특성, 목표에서 차이가 클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개인별 능력과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김소형과 김경호의 연구(2018)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기 극복의 힘을 얻게 된 저소득 가정 청년의 경험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빈곤층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로 접하면서 빈곤 정책의 주 대상자로 인식하게 만든 점은 지역사회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외에 부모, 비독립 성인자녀 세대가 필요로 하는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은 세대 간 간격을 좁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대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는 돌봄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했습니다. 가족 규모의 축소와 변화는 '돌봄의 사회화'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돌봄의 책임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중 어디에 얼마만큼 두어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탈가족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가족 돌봄의 주요 특성인 관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김승권 외, 2013). 하나의 대안으로 김승권 등(2013)이 제안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국가는 소득보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꾀하고, 가족은 가족 내 젠더, 세대 관계에서의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정서 중심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가족 돌봄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가족 돌봄의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토 론 문

“비독립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에 대해

정 윤 경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1. 느낀 점

첫째, 발표자가 인용하신 데이터에서 대략의 고위험군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성인이지만 미혼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한 아들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부모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 통계가 지난 5년간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위탁된 총 54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사례수가 적고 가정폭력으로 사건 처리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분석된 것이어서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의 현황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임상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임상에서 드러난 것은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이 갑작스러운 일이거나 일회성 사건이 아닌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누적된 부정적 관계와 감정적 대립이 배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이고 장기화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가정폭력 상담을 해오면서 사례들을 통해 느껴온 것으로서 발표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는 2016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60주년 심포지엄에서 ‘청소년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청소년들에 대해 어떠한 상담이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심포지엄 주제 속의 성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심포지엄이 갖는 의미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셋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나 상담만으로 폭력이 근절될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개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 피해자는 연령대가 50대에서 노년기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65세 이상 피해자의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일선에서만나게 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판정이 나더라도 피해자 보호 시설 연계, 재학대 발생 여부 모니터링,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행위자 상담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신고와 고소로 사건처리가 되지 않는 한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개입을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재학대 사례는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 통계에서는 2019년 대비 약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이 통계가 가족에 의한 학대인지는 구별하여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학대가 계속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학대 발생장소 중 가정 내 발생이 88%(2020년)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학대피해자와 행위가가 동거 중인 경우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22.6% 증가(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가정 내 재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예방차원 및 사후개입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 제안

첫째, 성인자녀의 부모폭력 관련 조사 내용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폭력과 달리 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여러 실태조사는 폭력에 대한 예방이나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성인자녀를 둔 부모 연령층에 대한 폭력실태는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보고서’의 세 개 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조사는 주체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조사 방법과 대상, 조사 내용에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 결과를 서로 보완하여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 개의 조사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습니다. 각 조사의 특징을 한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 내 폭력 조사가 목적으로 만 65세 미만에 대한 조사와 65세 이상의 조사를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조사 내용은 배우자폭력에 초점을 두어 폭력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 분석하고 있으나 그 외 가족원 간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 실태와 가해자가 누구인지만 조사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간략하게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과 주가해자, 주가해자와의 동거 여부, 도움요청 여부,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만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의 실태는 65세 미만 조사에서는 가족원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으나 그 이상 가해자에 대한 정보나 특성을 알 수 없고, 65세 이상 조사에서는 가족원폭력의 주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 외에 세부적 특성은 알 수 없습니다.

'노인실태조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현황과 특성에 대한 조사로서 그 중 노인학대 피해조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문항에서는 학대 유형별로 타인으로부터의 학대 피해 경험과 함께 주가해자를 적도록 하여 가해자가 가족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제외하고 다른 특성은 알 수 없고, 65세 미만인 경우는 조사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인학대현황보고서'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한 자료로서 노인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되는 연령층이 65세 이상이어서 65세 미만이거나 신고되지 않은 피해노인에 대해서는 특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의 자료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실태조사'와 '노인실태조사'는 둘 다 통계청 승인 조사로서 국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고, 폭력 피해 여부 외에 폭력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상이하여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조사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표 1〉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보고서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기	3년 -최근 2019년	3년 -최근 2020년	1년 -최근 2020년
대상	-전국 포본추출방법에 따라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분리 조사 -2019년 65세 미만 7,969명, 65세 이상 1,091명 조사	-전국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2020년 10,097명 조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총34개소)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 -연령 제한은 없으나 2018년 자료부터는 65세 이상만 있음. -2020년 16,973 사례
부모 폭력 관련 내용	-65세미만: 가족원 폭력, 가해자 -65세이상: 배우자 제외한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 주가해자 및 주가해자와 동거여부, 도움 요청 여부 및 도움요청 하지 않은 이유	-타인에 의한 폭력 경험과 가해자와의 관계	-신고 및 학대사례 판정, 재학대 건수 -학대발생장소, 학대유형, 가구형태 -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피해노인 연령대, 행위자 연령대
장점	-전국 성인 대상으로 가족원에 의한 학대 발생률과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음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 발생률과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음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폭력 관련된 질적인 조사가 가능함
한계점	-가해자의 연령대, 결혼여부, 갈등 원인에 대한 조사 없음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에 자녀의 연령/동거여부/결혼여부 등 자세한 특성 조사 없음	-신고되지 않은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일반화의 한계가 있음.

효율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조사에서 집중하여 폭력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실태조사'는 본래 조사 목적이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65세 미만의 피해부모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설명한 점들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조사가 분리되어 실시되지만 배우자 외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관련 문항을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문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가해자녀와 동거/비동거 여부, 가해자녀의 결혼상태, 경제적 자립정도, 행위자 및 피해자의 건강 요인 등 인구사회학적인 세심한 분류와 함께 갈등요인, 성장과정에서의 폭력 노출이나 피해경험 등을 조사한다면 조사결과를 활용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성인자녀에 의한 부포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배우자 폭력/아동학대가 드러난 가정의 다양한 구성원간 폭력에 대한 스크리닝과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후 개입이 쉽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한 가해자에 강제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피해자는 폭력 중단을 간절히 원하지만 법적 처벌로 자녀에게 피해가 가기를 원치 않거나 가족과의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공적인 도움 요청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보니 재학대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폭력실태조사(2019)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른 가족원에 의한 폭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가족이라서' 66.2%,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20.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노인이 자녀의 폭력에 적극 대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차원의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는 중복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김기현, 김용희, 김경희, 2018; 김혜정, 조한나, 2015; 이상균 외, 2017)3). 현행 배우자 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행위자와 피해 배우자의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개입도 이루어진다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폭력 피해 자녀에서 가해 자녀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부모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존속 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정 내 부모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년 제정)에 의해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 조항을 추가하거나, 노년기 부모의 피해에 집중한다고 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제정)4)과 같이 노인에 대한 폭력을 다룰 수 있는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폭력은 배우자폭력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되는 과정이 있었고, 부모-자녀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정 내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 하에 성장하던 자녀는 어느 시점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힘과 통제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피해부모는 물론 가해자녀에게도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주고 부모-자녀 관계는 폭력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폭력에 대한 상담과 개입에서는 이처럼 배우자폭력과는 다른 기제를 이해하고,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 특성이 고려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상담자는 다양한 가족구성원간 폭력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폭력에 특화된 상담·개입 연구와 매뉴얼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 론 문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황 순 찬 초빙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 - 주제발표 요약 및 토론

제목	주제	영역	내용	토론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과 주요 쟁점	실태로 본 한국 가족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 1인 가구의 증가와 부모-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의 감소 •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2.3명 수준) • 1인 가구 증가추세 지속 •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변화(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 비혼 출산 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와 가족 형태에 대한 유연성) • 다문화 가정의 증가	• 한국 가족의 변화는 가족 유대감 해체와 가족마저도 지지체계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음 • 해체되고 분리되어야만 공공으로부터 지원 가능성이 생기는 현실 • 경제적 토대가 부재한 취약한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
		가족 가치관 변화	•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인식(비혈연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인식 증가) • 물리적인 거주 공유보다 심리적인 유대감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 증가(네트워크 사회, meta-verse) •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결혼, 출산 당위성에 대한 태도 약화)	• 심리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가족 외에 신뢰할 만한 지지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가족이 지지체계로 작동하지 않을 때 대안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
		가족 기능	• 재생산 기능 약화(출산율 0.84명, 저출산 1위, 2029년부터 인구감소 예상) • 출산기피-만혼,양육부담(희망자녀수가 적정자녀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부양과 돌봄 기능의 약화(노인 부양관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는 비례관계) • 가족 간 부양책임 약화(단, 자녀취업 시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는 증가)	•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희망의 부재, 바뀌지 않는 사회적 기질과 관련 있음(높은 자살률, 잔인한 타살 증가, 저출산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취업 시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성인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노후를 희생하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 but 이러한 형태의 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는 젊은 세대는 사실상 안정된 취업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아무런 경력이 없는 30대 청년 증가)
		부부관계 및 가족 문화의 변화	• 부부관계는 규범중심에서 관계중심으로 변화(젊은세대의 의사소통 및 전반족 만족도가 타연령대보다 높음) • 가사 분담 비율 증가, 부부관계 평등성 향상(젊은 세대, 고학력, 경제수준,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분담비율 높음) • 정서적 교류와 친밀감을 강조하는 가족문화 형성되고 있음	• 부부관계 평등성은 안정된 결혼생활이 가능한 젊은 부부 세대를 전제로 한 것. but 새벽부터 심야까지 일해서 근근이 생활하는 젊은 부부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음 •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질 측면에서 개인화로 이전 세대의 가족관계보다 정서적 교류와 친밀감을 강조하는 가족 문화를 형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가족의 포스트모던화 논쟁	• 개인주의화, 다원화, 탈제도화, 관계중심의 가족(규범보다는 가족구성원 간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관계중심적 가족) • 5가지 가족형태-혼합적 가족형태, 독신, 시민가족, 분리동거형태, 편부모 가족(이 가운데 분리동거 형태가 가장 적합한 미래의 가족형태라고 봄) • 한국가족담론에 내재된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젠더불평등 정당화나 가족을 사적영역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비판) • 한국가족의 포스트모던화 논쟁-아직은 이혼, 재혼, 동성가족 등 다양성을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전통의 깨어짐"수준) vs. 개인주의화와 가족생활의 탈제도화는 포스트모던 담론에 부합한다는 입장 • 가구 구성과 가구형태의 다양화, 결혼관·출산관 및 자녀관의 변화, 초국적 가족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과 이로 인한 전통적 성별분업의 해체 등은 이미 근대적 정상 가족 개념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움(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자체가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 지지)	• 분리 동거 형태가 가능해지려면 본채, 별채, 사랑채 등의 구조가 필요.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에 상응하는 물적 토대가 있어야 함 • 한국 가족의 포스트모던화는 자발적으로 운동성을 갖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 구조가 만들어낸 산물일 수 있음. 나타난 결과의 다양성만으로 포스트모던화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파생된 가구 다양성이 크고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근대적 가족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적 가족관이 부분적으로 혼재된 형태(ex. 40~50대 중년남성 1인 가구.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한국가족의 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 한국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 -가족위기론자 vs. 가족재구조화론 • 통합적 관점-가족문제(가족위기론)+가족문제해결(가족 재구조화)	• 우리의 일상적 의식은 가족위기론에 머물러 있고, 사회현상은 가족재구조화론에 가깝고, 실천적 개입을 할 때는 통합적 관점이 활용되지 않을까?
		한국가족, 위기인가? 적응인가?의 논쟁	• 한국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적응론자(가족의 변화는 긍정적) vs. 위기론자(부부와 자녀라는 가족구성의 중심축 붕괴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 가족위기론은 양육과 재생산이라는 가족 본연의 기능을 강조. 부모와 자녀 관계의 약화가 가족의 핵심적 기능을 와해시켜 위기를 초래한다고 봄	•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족 변화가 향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것으로 예측하는 적응론 입장은 긍정적. but 가족 위기론은 가족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오직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어 근원적이고 대안적인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부모-성인 자녀 관계의 특성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성인이 되었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를 지속(캥거루족, 패러사이트 싱글, 부메랑 키즈, 연어족, 키퍼스 등) • 청년실업률 증가, 고용불안정, 높은 주거비,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결혼기피→독립을 어렵게 함→갈등(상황적 요인에 의한 강제된 선택) • 자녀가 독립, 결혼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한국의 가족문화(with 비혼, 만혼 심화)	• 과도한 가족복지(연복지) 의존 상황 • 같이 지내면 당연히 갈등도 빈번(ex. 영화 고령화 가족)

제목	주제	영역	내용	토론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과 주요 쟁점	부모-성인 자녀 관계의 특성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자녀와 분리된 노후를 원하는 부모들(비독립 성인자녀 증가는 궁극적으로 부모의 노후빈곤 초래,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으로 연결) •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보다 동거자녀로부터 더 도움을 받는 경우는 없음(부모에게도 부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심리적 압박, 관계 갈등의 원인) •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면에서 부정적(비동거 성인자녀에 비해 친밀성이 떨어짐) • '동거·의존형' 비독립 성인자녀의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 수준은 낮고, 우울수준이 높음(이 경우에 부모도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남)	
		사회변화와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	• 부의 불평등 심화(서민가정 청년들의 독립이 불가능한 사회적 맥락 존재) • 청년실업(부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갈등, 불화 가능성 증가) • 개인화된 사회(비혼, 무자녀 사회, 성인자녀와 부모세대와의 가치갈등, 원만치 못한 정서적 교류) • 기술발달과 세대간 격차(가족의 개인화 가속, 세대간 단절현상, 생활양식의 격차로 인한 갈등)	•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조건들 • 개인화와 근대적 가족관계 방식의 충돌 • 독립할 수 있는 출구가 닫힌 상황
한국 가족의 전망과 대응	한국 가족의 변화 전망	가족의 정의도, 함께 사는 것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 탈표준화, 유연화 • 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기준 • 혈연중심의 제도적 가족개념에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족관계로 변화	• 어떤 형태로든 다양화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당분간은 제도적 가족 개념이 혼재된 형태로 다양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개인화된 가족주의는 확대될 것이다	• 가족가치가 개인중심의 가치로 변화(개인화) • 개인화는 미래가족의 주된 가치 • 노동시장, 주택과 도시계획, 복지정책, 교통정책, 가족정책 등은 개인화된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족생활을 반영해야	• 사회제도와 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
		가족의 다양성은 커져 갈 것이다	• 비혼독신, 비혼동거, 비혼출산, 무자녀, 다문화가족, 비혈연 가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변화 • 결혼이 더 이상 가족형성에 전제가 되지 않음(결혼과 가족의 탈제도화, 탈법제화) • 전형적인 가족모델의 소멸 가능성 •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고 차별하지 않는 정책, 가족형성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 필요	• 동감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은 소규모화 되고 있다	•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 사회제도 및 정책 설계 시 1인 가구가 정책요인으로 고려되어야(1인 가구의 증가와 가구원 수의 감소) • 고연령대는 건강증진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 젊은 세대들은 주거안정화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큼(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 필요)	• 동감
		돌봄의 위기, 돌봄의 상품화로 대체될 것이다	• 제도와 개인의 욕구, 규범과 개인의 가치가 상충 • 개인주의 가치관은 가족의 보호기능(부모부양, 자녀양육)에 변화→돌봄의 위기 가능성 • 가족 의존형 돌봄이 아닌 사회적 돌봄체계로의 전환 필요 • 돌봄노동을 상품으로 구매 or 공공지원서비스에 의존	• 동감
		저출산 문제,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의 중대 사안이다	• 무자녀 가족에 대한 가족가치관 확산 •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획기적인 대안마련 필요)	•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질, 사회시스템 변화 필요
		평등한 가족문화,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보인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족문화 변화의 주요동인 • 여성 취업은 부부관계 평등화에 영향 • 가족 내 성평등 인식 확산, 의사소통과 관계 만족도 상승, 연령이 낮을수록 평등한 가족생활	• 전반적으로 동감 but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일수록 어린 자녀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성인자녀의 지체된 독립, 부모의 부담도 그만큼 연장될 것이다	• 비독립이 개인의 욕구에 반하는 선택, 자율적 결정인 아닌 강요된 결정이라는 특성을 가짐(이러한 특성상 비독립 성인자녀와 부모 모두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을 가진 관계) • 자녀부양 장기화에 따른 부모세대의 노후빈곤, 비독립 성인자녀의 삶의 질 하락 • 가족문제의 대응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틀에서 접근 필요	• 가족 단위 자살과도 연결된 부분
		비독립 성인자녀, 부모와의 갈등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 전반적인 환경에서 초래된 갈등,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대응 필요 • 별도의 독립된 주거 마련 방안에 초점(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독립하지 못함) • 일자리, 주거지원 정책,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지원	• 국가도, 가족도, 개인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가족기능의 사회화, 더 생각할 일이 있다	• 아동의 불안정한 양육, 빈곤한 한부모 가정의 문제, 저출산이 주는 사회적 위기, 노인부양 부담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성평등 의식은 증가했지만 과도기적 현상 존재(여성 한부모 가구는 이혼 후 소득감소로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됨)	• 근본적으로 일을 해도 생활자체가 어렵고 미래가 열리기 어려운 현실 • 경제적 독립 여부와 직결된 이혼 문제(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

사 실 혼 ❻

●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남편이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버스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남편의 사망 때문에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동법 제752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92 판결).

● 사실혼관계의 아내도 남편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근무 중 순직하였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청구서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1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1조), 선원법(제99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제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족연금수령을 위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아내도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사실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

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Q 남편과 저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살다가 10년 전부터 동거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왔는데 남편이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녀들이 빈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생활의 반은 남편 병간호로 보냈는데 저한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A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재산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관계 중에 사망한 임차인이 상속권자가 없는 때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과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2촌 이내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으로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2조).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있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어떻게 할까요」중에서

Q 50대 남성입니다. 2002년 3월경 PC방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창업주 상대로 실시한 교육을 듣던 중 한 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창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였고, 저는 네트워크 공사와 컴퓨터, 모니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업한 PC방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제품들을 마치 싸게 잘 구입해 온 것처럼 포장하고 들여왔습니다. 저는 운영을 시작하면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이미 연락이 단절된 후였습니다. 저는 PC 업그레이드와 모니터 수리를 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눈물을 머금고 2002년 7월경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문을 연 깔끔한 이미지로 1년여 간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경부터 주변에 대형 PC방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고객들이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업장 유지비로 필요한 월 500만원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고,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폐업하였습니다. 30대의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된 저는 오갈 곳도 없고 취직도 어려워 오랫동안 노숙생활과 일용근로를 전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하다 보니 우울증과 불

면증, 분노조절장애를 앓게 되었고, 일용근로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정신장애로 인해 소득이 완전히 끊긴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치료를 받는 중에도 한편으로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구직활동에 힘 썼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구직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데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오랜 노숙생활과 저소득으로 인해 정신적인 장애까지 생겨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럼에도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개인파산 • 면책과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다른 재산 없이 장기간 일용근로에 의존한 채 생활하였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파산 • 면책은 파산과 면책이라는 두 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자신의 총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의 종결만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면책제도라 하며,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종국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파산 • 면책이라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채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수송구조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는 채권자와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근에 받은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서), 경제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해 본 상담소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가 오래되어 현 채권자를 파악할 수 없어도 채무를 추적하는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규선 상담위원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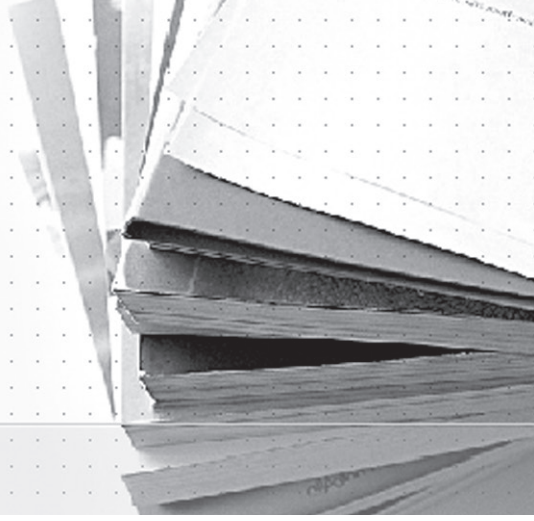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2020.11-2021.10

책	호암상 수상작 11인의 수상한 생각	김성훈 외 | 김영사 | 2020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강은숙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020
	미혼모 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 2020
	202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우수사례집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2021
	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 기재례집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20
	2021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 | 2021
	친족상속법	김주수, 김상용 | 법문사 | 2020
	상속 실무자료집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 2021
	가족관계등록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 2021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박동섭 | 법률정보센터 | 2021
	성년후견실무	김성우 | 박영사 | 2018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파산 재판실무	박동섭, 양경승 | 법률정보센터 | 2019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절차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 2021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오경수 외 | 지혜와지식 | 2020
	유언대용신탁과 등기실무	이남우 | 법률지식 | 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V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2020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김동근, 최나리 | 법률출판사 | 2021
	소장·보전처분·강제집행	김동근 외 | 진원사 | 2021
	2020 전자소송업무매뉴얼 소송당사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20
	2021 새로운 전자소송 매뉴얼	이덕기 | 법률정보센터 | 2021
	2021 성년후견 법령집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2021
	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실무	김동근 외 | 법률출판사 | 2017
	호적상담 사례로 본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이야기	정주수 | 동문 | 2021
	재산증여·상속 방법과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최영환 | 법문북스 | 20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법무부 | 법무부 | 2021
	가사소송실무	김동근, 최나리 | 법률출판사 | 2021
	2020 김유정문학상 수상작품집	정지영 외 | 강 | 2020
	2021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이서수 외 | 생각정거장 | 2021
	눈으로 만든 사람	최은미 | 문학동네 | 2021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 창비 | 2021
	2021 제66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최은미 외 | 현대문학 | 2020
	2020 제12회 현진건문학상 수상작품집	현진건문학상 운영위원회 | 화니콤 | 2020
	2021 제44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이승우 외 | 문학사상 | 2021
	불의 강	오정희 | 문학과지성사 | 2017
	2021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	문진영 외 | 문학동네 | 2021
	우리가 쓴 것	조남주 | 민음사 | 2021
	금색 공책 1-2	도리스 레깅 | 창비 | 2019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박복순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0
	2020 여성가족패널조사	주재선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0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Ⅷ)	박선영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0
	독일에서의 동성혼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지효 | 헌법재판연구원 | 2021
	프랑스의 장례폐지 위헌결정에 관한 연구	김지수 | 헌법재판연구원 | 202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강서영 | 헌법재판연구원 | 2021 등

총 187권

* 출처별 : 여성정책연구원 24권, 헌법재판연구원 23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3권 및 상담소 자료 24권 등 포함
* 자료분야별: 법학 89권, 사회과학 69권, 문학 22권 등 포함

최정아 사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II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본소 강당에서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1년 2차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화를 주장한 결과 1998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을 주도했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 및 주요 검찰청의 가정보호사건 상담수탁기관과 가정폭력상담소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고 피해자의 자조노력을 돕고 있다. 나아가 상담 현장의 경험을 근거로 더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과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본소의 가정폭력특례법 관련 상담과 법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정폭력의 사회과학적 배경과 가정폭력 관련 상담현장의 실무 양 측면에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통계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은 본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좌장을 맡은 본소 곽배희 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차연실 상담위원이 관련 주제에 관한 본소의 수탁상담 통계를 발표했다.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로 신연희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 – 부모와 비독립성년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의 '비독립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두 번째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장희숙 교수(성공회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윤경 객원교수(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공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으며, 현안도 산적해 있고 사회 전반에 온라인 회의가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심포지엄도 지난 7월 첫 심포지엄에 이어 발표자와 미리 예약을 한 상담소 회원들 이외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화상회의(ZOOM)로 실시간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소에서 두 번째로 시도한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의 관련기관과 연구기관, 대학(교수,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이들이 온라인 접속을 통해 다수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본소는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이 보다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본소 연구용역사업 관련 자문 회의 개최

지난 10월 22일 본소에서는 삼성생명 및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혼절차 중 상담 제도화를 중심으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의 운용사례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현정)와 본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차연실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가족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5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수업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12일, 19일, 26일 리갈클리닉Ⅱ 상담참관 수업과 보고서 작성 지도 등을 진행하였다.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조정사건을 진행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1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법률개관 및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사의 대처 프로토콜" 등을 주제로 온라인 (사전녹화)으로 진행한 한국상담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 2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 수강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 적용실제"에 대하여 온라인 원격강의를 하였다 . 14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현미 교수가 진행하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 (줌 회의)에 본소 조은경 상담위원과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021년 10월 상담통계

총 건수 5,004			
법률상담 (4,335)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784	3,479	70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63	44		62

• 인터넷 정보 이용 45,132 건

2021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004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335건(86.6%), 화해조정 563건(11.3%), 소장 등 서류작성 44건(0.9%), 소송구조 62건(1.2%)이었다.

법률상담 4,33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9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3.6%→24.5%), 사실혼해소(1.1%→1.2%), 위자료·재산분할(9.5%→9.6%), 친권·양육권(5.9%→6.0%), 양육비(7.3%→8.1%), 친생부인(1.0%→1.2%), 파혼(0.2%→0.3%), 이혼무효·취소(0.2%→0.5%), 부양(1.4%→1.5%), 유언·상속(5.8%→7.0%), 친양자(0.8%→0.9%), 개명(0.6%→0.7%), 성변경(0.8%→0.9%), 미성년후견(0.5%→0.6%), 성년후견(2.4%→2.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3%→0.4%), 파산(2.2%→2.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33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784건(18.1%), 전화상담 3,479건(80.3%), 인터넷상담 70건(1.6%), 지상상담 2건(0.0%)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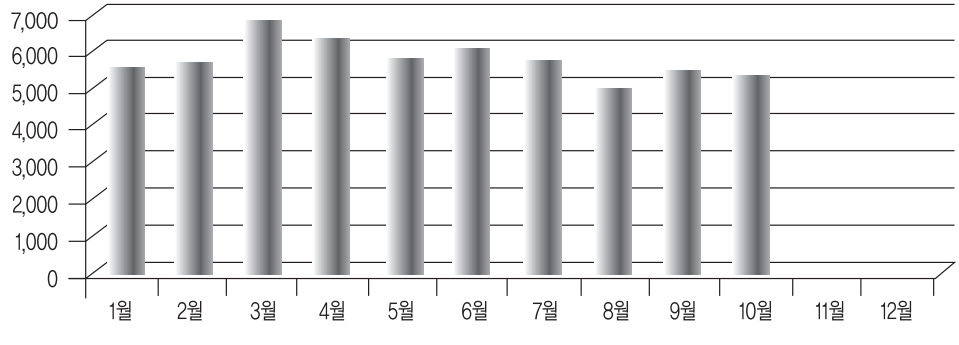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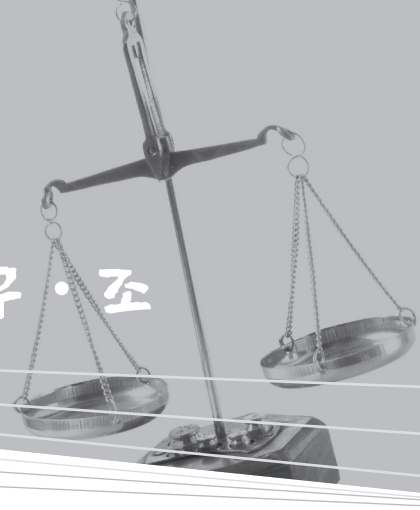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후 가출한 아내와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0-727

담당 : 이승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1세)와 피고(여, 57세)는 1999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1996년경 피고를 처음 만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다툼이 잦았다. 2012년경 피고는 원고가 모은 돈을 몰래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1개월 만에 귀가하였다. 2015년 5월경 피고는 온라인 고스톱 도박에 빠져 원고가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렸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더니 결국 같은 해 7월경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며 지냈다. 원고는 피고를 찾고자 노력했으나 연락 두절된 피고의 소재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 4.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심각한 의처증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0-878

담당 : 조현주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62세)는 2015년 5월경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후 201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는 없으며, 다만 원고는 전부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피고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1남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전인 2016년경 원고와 피고의 전처소생 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고를 집밖으로 내쫓았다. 피고는 혼인 후에도 원고가 늦게 귀가하면 술을 마신 후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다. 원고는 이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9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집에서 원고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심지어 원고의 사위에게 연락하여 "장모와 딸이 걸레인데 같이 살고 싶냐"고 말하여 원고와 사위의 관계 및 원고의 전부소생 딸 부부의 관계에 각각 악영향을 미쳤다. 피고는 2019년 9월경 원고에게 다시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함께 점을 보고 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가 "같이 안 산다고 법원에 다녀왔는데 왜 점을 보냐, 볼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는 화가 나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오른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현관문 밖으로 원고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는 위 폭행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폭행죄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다음날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에게 "그동안 해 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112신고를 한 후, 출동경찰관의 동행 하에 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그 길로 지인의 집으로 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원고는 쉼터에 입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6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5세)은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중 1994년경 더 좋은 환경과 유능한 강사진으로 질 높은 학습지도를 하고자 동료 강사 8명과 함께 약 2억 원을 공동 투자하여 보습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약 2년간 수강생이 꾸준히 늘며 학원이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1996년경 신청인과 동료 강사들이 상호갈등을 겪게 되었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결국 동료강사들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그만두었다. 수업을 가르칠 강사가 없다보니 수강생들도 하나 둘씩 빠져나갔고, 자연스레 소득이 줄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광고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결국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매도해야만 하였다. 그런 와중에 1997년경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신청인은 학원이라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2001년경 학원의 임차보증금까지 모두 잃고 폐원하게 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과외강사를 하며 생활하다가 2007년경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였다. 안정된 급여를 받기 시작한 신청인은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는데, 2008년 8월경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노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끊겼으며, 현재 기초노령연금 월 24만 원에 의존한 채 힘겹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8.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147

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2세)은 도자기그릇 제조·판매업을 하던 중 도자기공장 전자동시스템을 건축하기 위해 은행에서 9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시스템 가동 후 처음에는 투자금액이 커서 적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잘 운영하여 2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995년경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어음사기를 당하면서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사기 친 사람을 수소문하며 어떻게든 행방을 알아내고자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IMF 외환위기까지 겪게 되면서 자금융통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소유 중이던 공장과 주택이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경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고, 법인택시회사에서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갔다. 하지만 몇 년 뒤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소득활동이 끊기면서 채무지급 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9.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보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1-1-255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4세)와 채무자(남, 49세)는 1998년 11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9세)을 두었으나, 2018년 4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500만 원 및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결정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 모든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며 사건본인이 보낸 문자나 통화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결정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의 양육비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의 학업과 예체능 대학 입시 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채무자는 이혼 당시 결정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미지급된 양육비 및 위자료,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7.)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고맙습니다

2021년 10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학생 자원봉사

강원모, 강지연, 김남명, 김민주, 김민지, 김승현, 김준호, 김지민, 김지윤, 김지현, 김찬우, 김현정1, 김현정2, 김효빈, 김효진, 노재욱, 류지원, 문예빈, 박도윤, 박성환, 박연우, 박지희, 봉수빈, 손사빈, 송규진, 신수민, 오지현, 우상희, 우정연, 윤진호. 윤채은, 윤호열, 이상아, 이서현, 이세진, 이송현, 이수민, 이승준, 이시현, 장보민, 장윤아, 장지수, 전우인, 전우정, 정윤아, 정채연, 조예원, 조예진, 천윤빈, 최예진, 한봄이 님

후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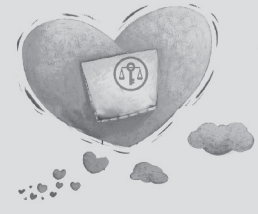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이승훈, 김용헌, 이현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2021년 12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1월 8일, 11월 22일, 12월 휴강)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무료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 시 : 2021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12월은 휴강)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 예약 필수**)
▶ 강 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장 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일 시	강 의 제 목
11월 25일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11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월 9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1년 11월 26일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SAMSUNG 삼성생명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 시 ▶
2021년 11월 26일

대 상▶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공정씨를 심고 투명물을 뿌리니
청렴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 **http://lawhome.or.kr/m**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